

대전광역시 대덕구

구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공 보
http://www.daedeok.go.kr

선	기관(부서)의 장
람	

제2022-65호
2022. 9. 23.(금)

차 례

훈 령(1)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훈령 제472호) …… 1

고 시(2)

- 지적기준점 성과 고시(고시 제2022-76호) …………… 6
-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고시 제2022-79호) …………… 7

공 고(1)

- 공시송달 공고(공고 제2022-935호) …………… 8

입법예고(5)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25호) …… 10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31호) … 17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33호) … 29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36호) … 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공고 제2022-939호) … 69

공 람									
--------	--	--	--	--	--	--	--	--	--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을 이에 발령한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최 충 규

대전광역시 대덕구 훈령 제472호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개정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의 채용목적, 채용인원, 담당업무, 소요예산 및 채용절차 등을 포함한 채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채용계획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부서의 장에게 채용 승인을 요청하여야 한다.

③ 관리부서의 장은 제2항에 따라 채용 승인을 요청받은 때에는 예산부서 등과 협의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적정성을 심사한 후 기간제근로자 채

용을 승인하여야 한다.

④ 사용부서의 장은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승인받은 경우에만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할 수 있다.

⑤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관리부서의 동의를 얻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심사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경우

2. 휴직대체 등 결원 발생에 따른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한 경우

제9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각호”를 “각 호”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별지 제1호서식의 표준근로계약서”를 “별지 제2호서식의 표준근로 계약서”로 한다.

제1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각호”를 “각 호”로 하고, 같은 조 각 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근로자명부(별지 제3호서식)

2. 임금대장(별지 제4호서식)

제14조 중 “별지 제4호서식”을 “별지 제5호서식”으로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근로시간 등) ① 근로시간은 주 40시간으로 하고, 1일 근로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하며, 휴게시간은 낮 12시부터 오후 1시까지로 한다. 이 경우 매주 토요일은 무급휴무일로 한다.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교대근로 등 직무의 성격 등을 고

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달리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이를 명시하여야 한다.

제18조제1항 중 “별지 제5호서식”을 “별지 제6호서식”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별지 제6호서식”을 “별지 제7호서식”으로 한다.

제20조제2항 본문 중 “「근로기준법」 제55조”를 “「근로기준법」 제55조”로 한다.

제2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2조(공가) 사용부서의 장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여 공가를 허가하여야 하며, 공가 기간은 유급으로 한다.

제23조제1항 전단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를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23조”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6호서식까지를 각각 별지 제2호서식부터 별지 제7호서식까지로 하고, 별지 제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훈령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

채용부서	○○과				
사업내용	<input type="checkbox"/> (사업명) <input type="checkbox"/> (사업 세부내용) <input type="checkbox"/> (신규/지속사업 여부)				
채용인원	(예) 2명	채용기간		고용형태	(예)기간제
채용사유	<input type="checkbox"/> (비정규직 채용 사유 명시)				
직종 및 담당업무	<input type="checkbox"/> (직종명) <input type="checkbox"/> (담당업무) <input type="checkbox"/> (근무시간)				
소요예산	<input type="checkbox"/> (예산액) <input type="checkbox"/> (산출기초) 인건비(기본급, 수당 등)				
채용절차	<input type="checkbox"/> (공개경쟁채용 여부) 공고 방식·기간, 비공개시 사유 <input type="checkbox"/> (면접시 제척·기피제 운영 여부) 미운영시 사유 <input type="checkbox"/> (공정채용확인서 징구) 미운영시 사유				
그 밖의 사항	<input type="checkbox"/> (그 밖에 업무특성 등 필요사항 기술)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 개정이유

무분별한 비정규직 채용 관행의 개선을 위해 고용노동부에서 권고한 「비정규직 채용 사전심사제」를 도입하고, 상위 법령을 반영하여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기간제근로자를 관리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제 운영 조항을 신설함(제4조, 별지 제1호서식 신설 및 제9조제1항·제2항 삭제).

나. 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을 명확히 하고 변경 절차를 명시함(제17조).

다. 공가 규정을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하도록 함(제22조).

라. 어문 규정에 맞게 띄어쓰기를 함(제9조제4항 등).

지적기준점 성과고시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4항 및 「지적측량시행규칙」 제2조 제2항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성과를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기준점 종류	기준점 번호	전		후		비 고
		평면직각중형선좌표		평면직각중형선좌표		
		X 좌 표	Y 좌 표	X좌표	Y좌표	
도근점	2326	418907.61	240275.12	418880.43	240274.89	세계좌표(재설치)
도근점	5751	418735.29	240134.30	418734.45	240134.68	세계좌표(재설치)
기 준 원 점 명		중부원점				
소 재 지		대전광역시 비래동 407번지 일원				
측 량 년 월 일		2022년 9월 15일				
측 량 성 과 보 관 장 소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비 고						

끝.

도로명주소 부여 고시

「도로명주소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건물 등에 부여한 도로명주소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 도로명주소 부여

지 번 주소	도 로 명 주소	부여 고시일	도로명주소 부여 사유	도로명 부여사유 (도로명 고시일)
오정동 63-7	한밭대로1033번길 10-19	2022. 9. 23.	건물신축	한밭대로의 시작 지점에서부터 약 10,330m 지점에서 왼쪽으로 분기되는 도로

※ 고시내용 및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042-608-5305)로 문의 또는 새주소 안내 홈페이지(<http://www.juso.go.kr>)에서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 도로명주소 사용 및 공부상 주소전환

- 도로명주소는 고시 후 도로명주소법 제19조제1항에 의거 공법관계에 있어서 주소로 사용되며, 2014년 1월 1일부터 도로명주소만을 사용해야 합니다.
- 공공기관에서 비치·관리하고 있는 각종 공부상 주소(소재지)는 해당기관에서 도로명주소로 변경합니다. 끝.

공시송달 공고

2022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건과 관련 위반건축물 소유자(점유자)에게 위반건축물 시정요구 공문을 등기우편으로 통지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제2항 및 행정절차법 제14조제4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제목: 위반건축물 시정요구(22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2. 공고기간: 2022. 9. 23. ~ 2022. 10. 7.(14일간)
3. 공고장소: 전국 지방자치단체 게시판 및 홈페이지
4. 송달대상: 붙임 참조
5. 송달내용

가. 22년도 이행강제금 재부과 대상 건축물 중 시정조치를 위하여 위반건축물 시정요구하였으나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서류가 전달되지 않아 이를 공시송달하오니 대덕구청 주택정책과(☎042-608-5143)로 연락 바랍니다.

나. 아울러, 공시기간이 지나면 지방세기본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본 서류는 본인에게 도달된 것으로 간주 됨을 알려드립니다. 끝.

【붙임】 공시송달 대상

연번	소유자	위반건축물 소재지	위반내용	구조	위반면적 (㎡)	용도	발생년도	비고
1	김*숙	중리동 165-2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34.46	주택 음식점	1998	폐문 부재
2	김*자	신탄진동 143-31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7.65	포장마차	1992	폐문 부재
3	박*진	신탄진동 143-31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16.10	음식점	1995	폐문 부재
4	심*수	대화동 40-85	무단증축	조립식판넬구조	53.85	음식점	2007	폐문 부재
5	유*준	읍내동 343-12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32.5	음식점	1999	폐문 부재
6	전*숙	상서동 344-2	무단증축	일반철골구조	11.4	창고	2012	폐문 부재
7	천*순	송촌동 464-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25.86	음식점	2000	폐문 부재
8	이*선	중리동 391-5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18.24	음식점	2010	폐문 부재
9	장*진	중리동 411-9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조립식패널구조	34.2	음식점	1992	폐문 부재
10	이*주	중리동 500-1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10.8	주택	2002	폐문 부재
11	유*호	덕암동 19-14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10.4	창고	2014	폐문 부재
12	김*엽	비래동 140-1	무단증축	컨테이너구조	6.25	창고	2005	폐문 부재
13	진*식	비래동 137-36	무단증축	FRP구조	12.35	주택	1990	폐문 부재
14	박*순	목상동 185-1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1.86	소매점	2004	폐문 부재
15	유*미	읍내동 336-2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21.36	주택	1991	폐문 부재
16	최*영	중리동 119-6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8.51	소매점	1995	폐문 부재
17	김*제	덕암동 8-18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22.6	창고	2005	폐문 부재
18	황*숙	중리동 239-33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3.6	주택	2009	폐문 부재
19	한*수	대화동 35-411	무단증축	시멘트블럭구조	48.6	주택	2009	폐문 부재
20	김*희	평촌동 535-1	무단증축	경량철골구조	3	주택 (계단)	2013	폐문 부재
21	송*자	연축동 200-4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9	창고	2006	폐문 부재
22	강*화	평촌동 535-1	무단증축	조립식패널구조	5	창고	2011	폐문 부재
23	계*순	중리동 366-18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20	음식점	2014	폐문 부재
24	박*식	중리동 254-27	무단증축	철파이프구조 조립식패널구조	23.96	주택	2001	폐문 부재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통장 등의 임명 절차를 규칙으로 정하도록 위임함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 동 행정의 최일선에서 민관의 가교역할을 수행하는 통장의 원활한 활동을 위해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기진작을 도모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5조)
 - 나. 통장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해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안 제14조제4항 신설).
4. 의견제출
 - 가. 이 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분권과(전화: 042-608-6512, FAX: 042-608-3822,
E-mail: hsl020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과 담당자 홍성래(전화: 042-608-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

제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5조(통장·반장의 임명 등)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4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장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제1호 중 “해촉”을 “해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4조 (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② (생략) <u><신설></u></p>	<p>제4조(통·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 ①·② (현행과 같음) <u>③ 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u></p>
<p>제5조 (통장·반장의 위·해촉) <u>①통에 통장을 두고 반에 반장을 둘 수 있다.</u> <u>②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동장이 위촉한다.</u> 1. 통장은 해당 통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구역에 거주하는 사람으로서 책임감이 강한 사람 중에서 통장의 추천에 따라 위촉하며,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요구할 경우에도 위촉할 수 있다. 3. 통장·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통장은 2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반장은 계속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후보자가 없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4. 제3항에 따른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통장의 임기는</p>	<p>제5조(통장·반장의 임명 등) <u>「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 따라 통장·반장의 임명 등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u></p>

새로운 임기가 시작된 것으로 본다.

5. 제1호 중 위촉(재위촉 포함)에 관한 절차 등은 규칙으로 정한다.

③ 동장은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촉하여야 한다.

1. 관할 통·반 이외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월 이상 임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3. 민·형사상의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3월 이상 통장·반장회의에 불참하는 등 불성실하게 직무에 임하거나 품위를 훼손한 경우

5. 개인의 영리에 통장·반장의 권한을 이용하거나 남용하였을 경우

6. 관할구역의 세대주 과반수가 해촉을 요구한 경우

7.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통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다.

제14조 (실비변상) ①·② (생략)

③ 삭 제

<신 설>

제14조(실비변상) ①·② (현행과 같음)

④ 통장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통신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7조(자치구가 아닌 구와 읍·면·동 등의 명칭과 구역) ① ~ ④ (생략)

⑤ 행정동에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 등 하부 조직을 둘 수 있다.

⑥ (생략)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이장 및 통장의 임명) ① 법 제7조제5항에 따른 행정동의 통에는 통장을 두고, 법 제7조제6항에 따른 읍·면의 행정리에는 이장을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장 및 통장은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중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읍장·면장·동장이 임명한다.

③ 읍장·면장·동장이 제2항에 따라 이장 및 통장을 임명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시장·군수 및 구청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개정이유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2601호, 2022. 4. 20. 일부개정, 2023. 1. 1. 시행) 개정에 따라 조례 위임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제도 운영상 미비점을 보완하여 공유재산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공유재산관리계획 수립 대상에 해당하는 재산 가격과 면적 기준을 신설함(안 제11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1) 재산 가격: 취득 10억원 이상, 처분 10억원 이상

2) 토지 면적: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

나. 국유재산과 형평성을 제고하고자 주거용으로 계약된 공유재산 사용료·대부료 산정 요율을 1,000분의 25에서 1,000분의 20으로 하향 조정함(안 제27조제4항).

다.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 조문을 정비함(안 제3조제2항, 제25조, 제34조제2항).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토지정보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 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전화: 042-608-5303, FAX: 042-608-3829, E-mail: 2garden@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토지정보과 공유재산 담당자(전화: 042-608-5303)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제7조의2제1항제3호”를 “제10조의3제1항제3호”로 한다.
제11조의 제목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중전의 제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1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
2. 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

③ 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제12조의 제목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를 “(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관리계획”을 “공유재산관리계획”으로 한다.

제13조의 제목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 중 “관리계획서”를 “공유재산관리계획서”로 한다.

제25조 중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를 “영 제32조제3항”으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외국인투자촉진법」”으로 한다.

제26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을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하며, 같은 조 제3호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로 한다.

제27조제3항제3호를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5항으로 하며, 같은 항(중전의 제4항) 제2호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을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 제5호 중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를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로 하며,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

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제3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영 제14조제7항”을 “영 제14조제8항”으로, “분할납부하게”를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로 한다.

제38조제1호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를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로 한다.

제47조 중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 위원회 운영 조례」”를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1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대부료 요율 변경에 대한 적용례) 제27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조례 시행 이후 산정·부과하는 대부료부터 적용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생략)</p> <p>②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이하 “<u>령</u>”이라 한다) <u>제7조의2제1항제3호</u>에서 “<u>조례</u>로 정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이란 <u>관련분야의 대학교수 또는 자격취득 후 3년 이상 활동 경력이 있는 사람을 말한다.</u></p> <p>③ ~ ⑤ (생략)</p> <p>제11조(<u>공유재산 관리계획</u>) <u>공유재산 관리계획</u>은 재산관리 총괄 전담부서에서 작성한다.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 임야관리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p> <p><u><신 설></u></p> <p><u><신 설></u></p>	<p>제3조(공유재산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현행과 같음)</p> <p>② ----- ----- ----- ----- ----- ----- -----.</p> <p>③ ~ ⑤ (현행과 같음)</p> <p>제11조(<u>공유재산관리계획</u>) ① <u>공유재산관리계획</u>----- ----- ----- ----- ----- ----- -----.</p> <p>② <u>영 제7조제1항제1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p>1. <u>취득: 10억원 이상의 재산</u></p> <p>2. <u>처분: 10억원 이상의 재산</u></p> <p>③ <u>영 제7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정하는 면적”은 다음 각 호와 같다.</u></p>

제12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는 사업(도로, 하천 등)으로 취득(보상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 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② (생략)

제13조(관리계획서)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관리계획서의 작성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9조제1항제4호, 제23조, 제32조제3항, 제38조제1항제25호, 제39조제2항제5호 및 같은 조 제3항의 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준용한다.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매각 대상 등) 제25조에 따른

1. 취득: 1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2. 처분: 2천제곱미터 이상의 토지

제12조(공유재산관리계획에 의하지 않는 재산의 취득관리) ① 공유재산관리계획-----

-----.

② (현행과 같음)

제13조(공유재산관리계획서) ---
----- 공유재산관리계획서-----
-----.

제25조(외국인투자기업의 범위) 영 제32조제3항-----

----- 「외국인투자 촉진법」 -----
-----.

제26조(외국인투자기업 등에 대하여 매각 대상 등) -----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인 투자 촉진법」 제2조제1항제7호에 따른 외국인투자환경 개선 시설 운영자(이하“외국인투자 기업 등” 이라 한다)에 대부·매각이 가능한 공유재산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공유재산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 산업단지 및 농공단지내의 공유재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로 설립 승인된 지역의 공유재산

4. ~ 6. (생략)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생략)

③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5 이상으로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38조의4제2항-----

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

4. ~ 6. (현행과 같음)

제27조(대부료의 요율) ①·② (현행과 같음)

③ -----

한다.

1.·2. (생략)

3.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의 대부요율은 연 1,000분의 25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신설>

④ 다음 각 호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1. (생략)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에 따라 외국인투자기업이 사업목적상 필

1.·2. (현행과 같음)

<삭제>

④ 주거용 건물이 있는 토지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20 이상으로 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의 경우에는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⑤ -----

1. (현행과 같음)

2.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제19조제4항-----

요하여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경우

3.·4. (생략)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제5호의 인구집중유발 시설이 영 제29조제1항제14호에 따라 구로 이전하였을 때

6. (생략)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생략)

② 영 제14조제7항에 따른 사용료 및 영 제32조제2항에 따른 대부료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 3. (생략)

제38조(조성원가 매각) 영 제42조에 따라 조성원가로 재산을 매각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으며, 이 경우 조성원가는 토지 매입비(각종 보상비를 포함한다)와 인건비, 투자개발비(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건축비를 포함한다)로 한다.

--

3.·4. (현행과 같음)

5.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 제3조제1호-----

6. (현행과 같음)

제34조(대부료 등의 납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영 제14조제8항-----

----- 다음 각 호와 같이 분할납부하게 -----

1. ~ 3. (현행과 같음)

제38조(조성원가 매각) -----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라 구가 조성한 일반산업단지, 농공단지와 같은 법 제38조의4 제2항에 따라 구가 국가산업단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분양받은 경우 국가산업단지내의 재산</p> <p>2. ~ 4. (생략)</p> <p>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청사를 건축하고자 할 경우에는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의를 거쳐야 한다.</p>	<p>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 ----- ----- ----- ----- ----- -----</p> <p>2. ~ 4. (현행과 같음)</p> <p>제47조(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심의) ----- ---- 「대전광역시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운영조례」----- ----- -----.</p>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지방자치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통장의 임명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시행규칙에 반영하고, 규칙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정비하여 통장·반장 운영의 효율을 도모하고자 함.
3. 주요내용(골자)
 - 가. 상위법령에 위임한 사항을 반영하여 목적규정을 정비함(안 제1조).
 - 나. 통장·반장의 임명, 해임, 임기 및 보고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2조 신설).
 - 다. “위촉”, “해촉”의 용어를 상위법령에 맞게 “임명”, “해임”으로 변경함(안 제3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9조, 제10조, 제12조).
4. 의견제출
 -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 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분권과(전화: 042-608-6512, FAX:
042-608-3822, E-mail: hsl0207@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자치분권과 담당자 홍성래
(전화: 042-608-6512)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를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로 한다.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 ① 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통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통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반 외의 지역으로 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사·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
· 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3조의 제목“(통장 임기만료 등의 공고 및 재공고)”를“(통장의 모집공고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통장 위촉사유”를“통장의 임명 사유”로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해촉된”을“제2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 중“위촉절차”를“임명절차”로 하며, 같은 항 제6호 중“그밖”을“그 밖”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공고방법”을“공고 방법”으로 한다.

제3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 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제1항 본문 중“등록신청서”를“등록 신청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작성 보관”을“작성·보관”으로 한다.

제5조의 제목“(통장의 위촉절차)”를“(통장의 임명절차)”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을 “통장은 제3조에 따른”으로, “통장위촉심의위원회”를 “통장임명심의위원회”로, “위촉한다”를 “통장이 임명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제3조제3항의 규정”을 “제3조제3항”으로,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를 “지원자”로, “위원회”를 “제8조에 따른”으로, “위촉 할”을 “임명할”로 한다.

제6조의 제목 “(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을 “(통장임명심의위원회)”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자”를 “사람”으로 하며, 같은 항 단서 중 “자는”을 “사람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호선으로 하며”를 “호선하며”로 한다.

제7조 중 “통장 위촉대상자”를 “통장임명대상자”로 한다.

제8조제1항 중 “과반수이상”을 “과반수 이상”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위촉대상자”를 “통장임명대상자”로, “심사표에 의하여 적임자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를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한다)”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2인 이상의 동점자”를 “동점자”로, “자로”를 “사람으로”로 한다.

제9조의 제목 “(통장·반장 위촉 통지 및 위촉장 수여)”를 “(통장·반장의 임명 통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통장·반장 위촉사항을”을 “통장·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지센터 홈페이지에”로, “개별통지 하여야”를 “개별통지하여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통장·반장 위촉시 위촉장”을 “통장·반장의 임명장”으로, “의하며”를 “따르고”로

한다.

제10조제1항 후단 중 “의한다”를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제7조에 규정한”을 “제7조제1항에 따른”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을 “해임된 경우에는 지체 없”으로 한다.

제12조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제3호 “위촉절차”를 “임명절차”로 한다.

별지 제5호서식 중 “위촉장”을 “임명장”으로 하고, “위촉기간”을 “임명기간”으로 하며, 본문 중 “위촉”을 “임명”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중 “위촉·해촉”을 “임명·해임”으로 하고, “위촉일자”를 “임명일자”로 하며, “해촉일자”를 “해임일자”로 한다.

별지 제7호서식 중 “위촉 기간”을 “임명 일자”로 한다.

별지 제8호서식 중 “위촉일자”를 “임명일자”로 하고, “최초위촉일자”를 “최초임명일자”로 하며, “재위촉일자”를 “재임명일자”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에 따라 위촉 및 해촉된 통장·반장은 이 규칙의 개정규정에 따라 임명 및 해임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규칙의 개정) 대전광역시 대덕구 사무전결처리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중 30. 동의 세부사무명란 중 “① 통·반장”을 “① 통장·반장”으로,
“② 통·반장 위·해촉“을 ”② 통장·반장 임명·해임“으로 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적임자”란 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등을 포함하여 동장이 작성한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 득점자를 말한다. ② “공개모집”이란 임기만료 등 통장위촉사유 발생시 제3조의 규정에 따른 공고 및 재공고로 통장희망자를 지원 신청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③ “세대”란 「주민등록법」상의 세대를 말한다.	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81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제2조(통장·반장의 임명 및 해임 등) ① 통장·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동장이 임명한다. 1. 통장은 해당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25세 이상의 사람으로 책임감이 강하고 주민의 신망이 두터운 사람 2. 반장은 해당 반 관할 구역에 거주하는 사람 중에서 통장이 추천하는 사람 ② 통장·반장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통장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③ 동장은 다음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통장·반장을 해임하여야 한다. 1. 관할 통·반 외의 지역으로 전출한 경우 2. 질병 또는 개인사정으로 6개	

월 이상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민사·형사 사건으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4. 직무수행이 현저히 불성실하거나 품위손상 등 그 밖의 사유로 통장·반장으로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5. 그 밖에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④ 동장은 통장의 임명 등 변동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5일 이내에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에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3조(통장 임기만료 등의 공고 및 재공고) ① 동장은 임기만료 등 통장 위촉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작성한 공고문을 임기만료 30일 전에 7일 이상 공고하여 공개모집하여야 한다. 다만, 자진사퇴 또는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해촉되었을 때에는 해촉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공고하여

제3조(통장의 모집공고 등) ① -

-- 통장의 임명 사유-----

--- 제2조제2항에 따라 해임되었을 때에는 해임된 -----

야 한다.

1. 2. (생략)

3. 통장 지원신청 및 위촉절차

4. 5. (생략)

6. 그밖에 필요한 사항

② 공고방법은 별지 제1호서식의 공고문을 동 홈페이지, 동 게시판, 해당 통의 적정 장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③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재공고를 한차례만 실시한다.

제4조(통장 지원신청 및 접수) ①

통장 지원신청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2호서식의 통장 지원자 등록신청서와 관할 주민 20명 이상의 추천(별지 제4호서식)을 받아 제출하여야 하며 주민의 추천은 세대별 1명으로 하고 미성년자는 제외한다. 다만, 현직 통장의 임기가 만료되어 연임하는 경우에는 통장 후보자 추천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다.

② 삭제

-----.

1. 2. (현행과 같음)

3. ----- 임명절차

4. 5. (현행과 같음)

6. 그밖-----

② 공고 방법-----

-----.

③ 제1항에 따라 공개모집한 결과 지원자가 없는 경우에는 한차례만 재공고하여야 한다.

제4조(통장 지원신청 및 접수) ①

----- 등록 신청서-----

-----.

③ 동장은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 통장지원 신청자 등록 조서를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제5조(통장의 위촉절차) 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통장의 위촉은 공개모집을 통하여 통장위촉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의결을 거쳐 위촉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재공고를 실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지원자가 없는 경우와 위원회 심의결과 적임자가 없는 경우에는 동장이 직권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6조(통장위촉심의위원회 구성)

① (생략)

② 심의위원은 관할 동에 거주하면서 지역실정에 밝고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동장이 위촉한다. 다만, 통장 선정에 불공정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자는 심의위원에서 제척하여야 한다.

③ 위원장은 동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으로

③ -----

-- 작성·보관-----.

제5조(통장의 임명절차) ① 통장은 제3조에 따른 -----
----- 통장임명
심의위원회-----
----- 동장
이 임명한다.

② 제3조제3항-----

--- 지원자-----
----- 제8조에
따른 -----
----- 임명할 ---
-----.

제6조(통장임명심의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

--- 사람 -----
-----.
----- 사람은 -
-----.
③ -----
----- 호선하며--

하며, 간사는 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업무담당자로 한다.

제7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통장 위촉대상자(단일후보를 포함한다)를 심의·의결한다.

제8조(심의·의결기준) ① 위원회는 구성원 과반수이상의 출석으로 개최하고 대상자를 심의·의결한다.

② 통장위촉대상자의 결정은 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등을 포함하여 통장이 작성한 심사표에 의하여 적임자 중 최고, 최저점수를 제외하고 합산한 점수 중 고득점자로 한다.

③ 심의결과 2인 이상의 동점자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통의장기거주기간, 통장추천인 수, 공익활동실적, 표창내역 순으로 점수가 높은 자로 한다.

제9조(통장·반장 위촉 통지 및 위촉장 수여) ① 동장은 통장·반장 위촉사항을 게시 또는 개별통지 하여야 한다.

-----.

제7조(위원회 기능) ----- 통장 임명대상자-----

-----.

제8조(심의·의결기준) ① ----- 과반수 이상-----

-----.

② 통장임명대상자-----

----- 심사표의 배점 중 60점 이상(100점 기준)의 득점자(최고·최저 점수는 제외한다) -----.

③ ----- 동점자-----

----- 사람으로 -----.

제9조(통장·반장의 임명 통지 등) ① ----- 통장·반장의 임명 사항을 동 행정복

지센터 홈페이지에 ----- 개별

<p>② <u>통장·반장 위촉시 위촉장은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하며, 별지 제6호서식의 통장·반장 등록부를 정리하여야 한다.</u></p> <p>제10조(통장증 발급) ① 동장은 통장에게 통장의 신분을 표시하는 통장증을 발급할 수 있다. 통장증은 별지 제7호서식에 <u>의한다.</u></p> <p>② 통장증은 조례 <u>제7조에</u> 규정된 임무 수행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p> <p>③ (생략)</p> <p>④ 동장은 소속 통장이 임기만료 또는 <u>해촉된 경우에는 지체없이 통장증을 회수하여야 한다.</u></p> <p>제12조(운영규정) 이 규칙에 규정된 사항 외에 통장 <u>위촉에</u> 필요한 사항은 동장이 따로 정한다.</p>	<p><u>통지하여야</u> -----.</p> <p>② <u>통장·반장의 임명장</u>----- ----- <u>따르고</u>----- ----- -----.</p> <p>제10조(통장증 발급) ① ----- ----- -----. ----- <u>따른</u> <u>다.</u></p> <p>② ----- <u>제7조제1항에</u> <u>따른</u> ----- -----.</p> <p>③ (현행과 같음)</p> <p>④ ----- ----- <u>해임된 경우에는 지체</u> <u>없</u>----- -----.</p> <p>제12조(운영규정) ----- ----- <u>임명</u>----- -----.</p>
--	--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통·반 설치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을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구하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 제정(개정·폐지)하고자 하는 이유
상위법인 「지방세기본법」 및 「지방세법」 개정에 따라 세무조사 결과 통지 기간을 명확히 하는 등 관련 조문 및 별지를 정비하여 현행 규정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골자)
 - 가.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하여 세무조사를 마친 후 20일 이내에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기간을 명확히 정함(안 제37조제1항).
 - 나. 외국 과세기관과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등의 사유로 세무공무원이 세무조사 결과의 통지기한까지 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해당 부분을 제외한 조사 결과를 통지할 수 있도록 하되, 그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해소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 결과를 통지하도록 함(안 제37조제2항 및 제3항 신설).

다. 법령 개정에 따라 별지서식의 작성요령 등을 변경 정리하고,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이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됨에 따라 관련 규정을 정비함(안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

4. 의견제출

가. 이 규칙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년 10월 13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세정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의견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 (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전화: 042-608-6661, FAX: 042-608-3824, E-mail: trumj@korea.kr)

라. 의견 제출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 세정과 담당자 송명재(전화: 042-608-6661)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한다.

제21조 본문 중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으로 한다.

제3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된 날부터 7일”을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법 제88조제1항”을 “법 제88조제2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항(종전의 제2항) 제1호 중 “「지방세징수법」 제22조”를 “「지방세징수법」 제22조”로 하며, 같은 항 제5호 중 “법 제88조제4항제2호”를 “법 제88조제5항제2호”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

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 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6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지방세 서면 조사서

(지방세 납세자권리현장 재중)

	법인유형	주요 목적 사업
○ 법 인 명 : (인) ○ 대 표 자 : ○ 법인소재지 : ○ 사업년도 : 년 월 일부터 ~ 년 월 일까지 (제 기) ○ 작 성 자 : (근무부서: 성명: (인) 전화:) ○ 제 출 일 자 : 년 월 일	제 조 업 () 건 설 업 () 판 매 업 () 운 송 업 () 기 타 ()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지방세 서면조사 안내

1. 이 조사서는 법인에 대한 지방세가 정당하게 납부되었는지 여부를 「지방세기본법」 제140조 제1항에 따라 조사하는 것이므로 각 서식의 작성요령에 따라 성실하게 작성하신 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이번 조사는 서면조사이므로 “조사서에 첨부 할 서류”에 대해서는 첨부서류만으로 조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제출하여 주시고, 첨부된 서류는 내에 로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사업 연도별 작성 [조사대상기간이 5년이면 사업 연도별(5개년) 각각 작성] 및 각 서식 작성시 대전광역시 전체 분을 작성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작성 후 보낼 곳 : 우편번호 : 34443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세정과
※ 문의사항 전화 : (042)608-6661, 608-6662

조사서에 첨부할 서류

- 공통으로 첨부하여야 할 서류(건설업, 제조업, 기타법인 모두 해당)
 - 각 사업 연도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세무서에 신고한 신고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 시산표, 유형자산 감가상각명세서,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및 주식·출자지분 양도 명세서 등)
 - 도급공사원가명세서 및 도급계약서 사본
 - 각 사업 연도별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신고내역서
※ 첨부된 서류 사본은 반드시 원본대조필 날인

서 식 목 차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관련 명세서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
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
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
8.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상황

1.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치 등) 관련 명세서

법 인 명 : (인) 자 : . . .

법인등록번호 : 지 : . . .

법인소재지 : (제 기)

년 월 일 현재 당 법인의 소유자산과 장부상 가액을 다음과 같이 확인합니다. (단위 : 원)

계정 과목	과세 기관	물 건 소 재 지	전 기 잔 액	기말잔액	당 기 증가액 (A)	취득 일자	공 제 금 액					차인과표 (A-B)
							기 과 표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특세	비과세	합계(B)	

2.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자본금 : 백만원)

(단위

: 원)

설립·설치 년 월 일	① 사 업 장		② 종업원수 (7.1)	③ 정당 산출세액		④ 기부과 세액			⑤ 차인세액 (③-④)	
	명 칭	소 재 지		주민세	지 방 교육세	주민세	지 방 교육세	납부일	주민세	지 방 교육세

3.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장명	소재지	사업 개시일	연면적 (a)	비 과 세 면 적				과세면적 c=(a-b)	정 당 세 액 (d)	기납부 세 액 (e)	납 부 일 자	차인세액 f=(d-e)
				기숙사	구 내 식 당	기 타	소 계 (b)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재산분 주민세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사업장면적 330㎡이하의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①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

② 정 당 세 액 : 과세면적 × 250원

4.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단위 : 원)

사업 장명	소재지	사 업 개시일	①기본세액		② 연면적	③비과세 면적				과세면적 a=(②-③)	④ 연면적 세 액	⑤정당 세액		⑥기 납부세액		차인세액 b=(⑤-⑥)		
			주민세	지방 교육세		기숙사	구내 식당	기타	소계			주민세	지방 교육세	주민세	지방 교육세	납부 일자	주민세	지방 교육세

※ 관내 사업장이 여러 곳에 있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별로 구분하여 작성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 지방세법 개정으로 2021년부터 주민세 재산분과 주민세 균등분을 주민세 사업소분으로 통합 (과세기준일 7월 1일, 납기 8.1. ~ 8.31.까지 신고 납부)
- 사업장면적 330㎡이하는 사업장 소재지, 명칭, 연면적만 기재하고 330㎡초과는 ㎡당 250원에 해당하는 납부세액 등을 기재
 - 비과세 면적 : 기숙사, 구내식당, 연수관 등 복리후생시설
 - 비과세 내역 : 비과세에 해당하는 면적을 해당란에 기재(비과세 대상이 많을 경우 상세

명세서 별도 작성 첨부)

- ① 기본세액 : - 자본금 50억원 초과 : 300,000원
 - 자본금 3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 150,000원
 - 자본금 30억원 이하 및 그 밖의 법인 : 75,000원
- ② 지방교육세 : 기본세액 × 25%(연면적 세액은 지방교육세 대상 아님)
- ③ 연면적세액 : 과세면적 × 250원(오염물질 배출 사업소는 2배 증가)

5.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사업장명 : >

(단위 : 원)

구분	① 종업원수 원수	②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③ 급여 총지급액	④ 비과세 대상급여	과세표준 a)=(③-④) a)=(②-④)	⑤ 산출세액 [a)×(0.5/100)]	⑥ 기 납부세액		차입세액 b)=(⑤-⑥)
							세액	납부일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 1. 반드시 연도별 결산서상의 급여, 상여, 잡급, 복리후생비 중 급여성격의 계정과 일치하여야 함

2.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대전광역시 소재 사업장) 작성요령

① 종업원수 : 급여의 지급여부와 상관없이 사업주 또는 그 위임받은 자와의 계약에 따라 해당 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기재하고, 수시 고용인원의 경우 월 연인원을 당월의 일수로 나눈 평균인원을 합한 인원수로 산정

② 급여총지급액 : 사업주가 그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로서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근로 소득에 해당하는 금액의 총액

③ 비과세 소득

-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른 비과세 대상급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육아휴직(이하 이 조에서 "육아 휴직"이라 한다)을 한 종업원이 그 육아휴직 기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 6개월 이상 계속하여 육아휴직을 한 종업원이 직무 복귀 후 1년 동안 받는 급여(2020.01.01.부터 시행)

④ 산출세액 : 과세표준(종업원 급여총액)에 세율(0.5/100)을 곱하여 산출

- 2016.01.01.부터 2019.12.31.까지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35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 2020.01.01.부터 종업원 월급여총액이 1억50백만원 초과시 과세대상임

6.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사업년도		사업장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	사업장명	
------	--	-----	-----------	--	-------	------	--

(단위 : 원)

구분 월별	① 소득세 납부액								②산출 지방소득세 (a)	③기납부 세액 (b)	납부 일자	④차인 세액 (a-b)
	근로	퇴직	배당	이자	사업	법인세법 제98조	기타	합계 (과세표준액)				
1												
연말 정산												
2												
3												
4												
5												
6												
7												
8												
9												
10												
11												
12												
합계												

※ 사업장이 많을 경우 사업장별로 각각 별도 작성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명세서 작성요령

- 원천징수한 소득세액에 대한 사업장별로 각각 작성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참조
- 매월별 작성하는 소득세 징수액 집계표 또는 원천세 예수금장부 등에 따라 작성

- ①

소득세 구분란

 : 월별 소득세징수액 집계표에 기재된 소득구분별 원천징수한 금액 기재
- | |
|-----|
| 기 타 |
|-----|

 : “예” 인정상여, 인정배당, 지상배당, 기타소득 등
- | |
|----------------------|
| 「법인세법」 제98조
(외국인) |
|----------------------|

 : 「법인세법」 제98조(외국인)에 따른 법인세는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대상이므로 원천징수시 기재
- ②

산출 지방소득세

 : 합계(과세표준액) × 「지방세법」 제103조의13의 세율

※ 소득세 원천징수 이행상황신고서 사본을 반드시 첨부하셔야 합니다.

7.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

법 인 명 :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인)

사업 년도	년도	법인세액신고일 (결정일, 경정일)		년 월 일
법 인 세 결 정 액	원	법 인 총 지방소득세액	원	원
법인총건축물 연 면 적	m ²	법 인 총 종 업 원 수	명	명

(단위 : 원)

사업장 내역		안 분 내 역			사업장별 법 인 세	사업장별 지 소 득 세	기 납 부		추 징 세 액		
사업장	소재지	사업장별 종업원 총수	사업장별 건축물 연면적	사업장별 건축물 총연면적			사업장별 안분비율	지 방 소득세	납부 일자	본 세	가산세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8. 법인 주식 및 주주 변동상황

주주 또는 주식의 지분 및 출자변동상황은 아래와 같으며, 친족 및 특수관계란에 표시자 이외에는 「지방세기본법」 제46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에 따른 친족 및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없음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인)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사업년도	주식총수	주 당 액		총출자액							
주주또는 사원명단	도로명 주소	친 족 및 특수관계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년 월 일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주식수	%

조사결과 보고서

- 법 인 명 :
- 법인등록번호 :
- 소 재 지 :
- 조 사 일 자 : ~ (일간)
- 추정세액 : 집계표 붙임
- 붙임서류
 - 법인조사 결과 추정세액 집계표
 - 법인소유자산(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등) 관련 (명세서)조사서
 - 취득세 누락분 조사서
 - 비과세 공제내역서
 -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주민세 균등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재산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사업소분 (명세서)조사서
 - 주민세 종업원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특별징수분 (명세서)조사서
 - 지방소득세 법인세분 사업장별 안분 (명세서)조사서
 - 법인 주식 및 주주변동상황 (명세서)조사서
 -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위 법인에 대하여 지방세 법인조사 결과를 붙임과 같이 보고합니다.

년 월 일

주무관	담 당	과 장	결 재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1. 법인조사 결과 추징세액 집계표

(단위 : 건/원)

법 인 명				법인등록번호			
소 재 지							
과 세 기 관		계	구 청	구 청	구 청	구 청	구 청
사 업 년 도		자 지	자 지	자 지	자 지	자 지	자 지
합 계		건수					
		세액					
취	소 계	건수					
		세액					
특	법 인	건수					
		세액					
세	과 점	건수					
		세액					
등록면허세		건수					
		세액					
주 민 세 (균등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재산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사업소분)		건수					
		세액					
주 민 세 (종업원분)		건수					
		세액					
지방소득세 (소득분)		건수					
		세액					
지방교육세		건수					
		세액					
농어촌특별세		건수					
		세액					

년 월 일

조사자 : 직급 세무 급 성명

 직급 세무 급 성명

2.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 로 길 (동)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	계	전용60㎡이하	전용60㎡초과- 85㎡이하(감면분)	전용60㎡초과- 85㎡이하(과세분)	전용85㎡ 초과	상가 등
면적 (㎡)	세대					
	개동					개동
비율	%	%	%	%	%	%
	%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m² %

○ 총 공사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득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3. 비과세 공제내역서

법 인 명 : (인) 자 :
법인등록번호 : 지 :
법인소재지 : (제 기)

(단위 : 원)

년 월 일	내 역	금 액	비 고

4. 취득세 누락분 명세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물건의 표시

연결 번호	과세기관	과 세 물 건 (소 재 지)	취 득 일 자	비 고
1				
2				
3				
4				

2. 세액산출내역 (단위 : 원)

(단위 : 원)

연결 번호	차 인 과 표	구 분	세 율	취 득 세	농 특 세	감면분 농특세	계
1		본 세					
		가산세					
		계					
2		본 세					
		가산세					
		계					
3		본 세					
		가산세					
		계					
4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5. 건축물 과세표준 안분내역서

○ 건축물 명칭 :

○ 과 세 물 건 : 구·군 로 길 (○○동·리) 법인등록번호 :

○ 사용승인서 교부일 : 년 월 일

○ 건축물 연면적

구분	계	전용60㎡이하	전용60㎡초과- 85㎡이하(감면분)	전용60㎡초과- 85㎡이하(과세분)	전용85㎡ 초과	상가 등
면적 (㎡)	세대 개동					개동
	%	%	%	%	%	%
비율	%	%		%		
	%	%		%		

※ 전용 85㎡ 초과 및 상가 : m² %

○ 총 공 사 비 :

- 건설용지비 :

○ 건축공사비 :

○ 취 득 세 :

○ 비 과 세 : (비과세내역 별도 기재)

○ 건축순공사비 :
(과세표준액)

○ 감면 및 면제 과표금액 :

○ 기납부한 과표금액 :

○ 차인 과표금액 :

6. 과점주주에 대한 과세자료 집계표

법 인 명 : (인)

법인등록번호 :

법인소재지 :

1. 과점주주현황 (단위 : 주/%)

과 점 주 주			. 현재			. 현재			증가 비율
성 명	주 민 (법인) 등 록 번 호	관계	총 주식수	소 유 주식수	비율	총 주식수	소 유 주식수	비율	

2. 과세물건 가액 및 과점주주 과세표준 산출내역 (단위 : 원)

과 세 물 건			장 부 가 액	과점 비율	과 세 표 준
소 재 지	종 류	수 량			

3. 산출세액 (단위 : 원)

납 세 의 무 자 [주민(법인)등록번호]	과점 비율	과세표준	세율	취 득 세			농특세 (가산세포함)
				본 세	가산세	계	

※ 가산세는 신고불성실가산세만 산출되었고,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산출되지 않았음

세무조사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전통지를 생략하고, 세무조사를 개시할 때 사전통지 생략이유 등을 기재한 세무조사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조사공무원은 세무조사 결과를 확정하였을 때에는 조사결과를 확정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서면으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납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 3. (생략)
4. 법 제88조제1항에 따라 과세 전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

<신 설>

제37조(세무조사 결과통지) ① --
----- 세무조사(서면조사를 포함한다)를 마친 날부터 20일(법 제33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

1. ~ 3. (현행과 같음)
4. 법 제88조제2항-----

② 조사공무원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조사결과를 통지할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납세자의 동의를 얻어 그 부분을 제외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할 수 있다.

1.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및 조세조약에 따른 국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결과 통지를 생략할 수 있다.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에 따른 납기 전 징수의 사유가 있는 경우
2. ~ 4. (생략)
5. 법 제88조제4항제2호 단서

외자료의 수집·제출 또는 상호합의절차 개시에 따라 외국과세기관과의 협의가 진행 중인 경우

2. 해당 세무조사와 관련하여 지방세관계법의 해석 또는 사실관계 확정을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 대한 질의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③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해소된 때에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부터 20일(법 제33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40일) 이내에 제2항에 따라 통지한 부분 외에 대한 조사결과를 납세자에게 설명하고, 이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④ -----

-----.

1. 「지방세징수법」 제22조-----

2. ~ 4. (현행과 같음)
5. 법 제88조제5항제2호 -----

및 제96조제1항제3호 단서에
따른 재조사 결정에 따라 조
사를 마친 경우

6. (생략)

6. (현행과 같음)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지방세 세무조사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입법예고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제정 시행에 앞서 그 내용과 취지를 주민에게 미리 알리고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대전광역시 대덕구 법제사무 처리 규정」 제7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년 9월 23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1. 자치법규명: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2. 제정이유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명예구청장 제도 운영을 통해 다양한 구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 가. 조례의 목적 및 명예구청장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1조 및 제2조).
- 나. 명예구청장의 임무, 위촉, 임기, 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3조부터 제6조까지).
- 다. 명예구청장의 예우 및 회의 참석수당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7조 및 제8조).
- 라. 명예구청장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함(안 제9조).

4. 의견 제출

가. 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은 2022. 10. 13.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참조: 자치분권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나. 의견 제출 사항

- 1)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성 및 반대 의견과 그 사유)

2) 의견제출자의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명)·주소·전화번호

다. 의견 제출할 곳: 우 34443 /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전로1033번길 20(오정동)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분권과(전화: 042-608-6515, FAX: 042-608-3822,
E-mail: gwonhui84@korea.kr)

라. 의견 제출 방법: 서면, 전화, FAX, 이메일, 직접방문 등

5. 그 밖의 사항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광역시 대덕구청 자치분권과 담당자 김권희(전화: 042-608-6515)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끝.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의 다양한 의견 수렴 등 소통 강화를 통한 구정 목표 실현을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의 운영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예구청장의 운영) 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대전광역시 대덕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정책에 반영하기 위하여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이하 “명예구청장”이라 한다) 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의 위촉, 정기회의 및 임시회의 운영 등 총괄업무는 행정지원국장이 담당한다.

③ 제3조에 따른 명예구청장 임무와 관련된 업무는 분야별로 해당 실·국·소·센터장이 행정지원국장과 협의하여 수행하고, 해당 실·국·소·센터장은 활동사항을 행정지원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임무)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임무를 수행한다.

1. 구민의 의견수렴
2. 대전광역시 대덕구(이하 “구”라 한다)의 주요 정책결정과정 참여 및 정책제안
3. 주요 구정 4개 분야의 실행방안 제안
가. 일반행정분야

나. 공동체복지분야

다. 기후경제분야

라. 도시안전분야

4. 구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구민과의 소통 활동

5. 그 밖에 구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위촉 및 해촉) ① 명예구청장은 10명 이내로 구성하되 「양성평등 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라 특정 성별이 전체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명예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분야별 해당 실·국·소·센터장의 추천을 받아 구청장이 위촉한다.

1. 각 분야별 관련 법인·단체의 대표 또는 대표였던 사람

2. 각 분야별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그 밖에 구정에 관심이 많고, 주요 구정 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③ 구청장은 명예구청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명예구청장을 해촉할 수 있다.

1. 장기간 회의에 참석하지 않는 등 명예구청장으로서의 임무를 수행하지 않는 경우

2. 심신장애, 건강 등으로 인하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3. 그 밖에 품위손상 등으로 임무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

제5조(임기) 명예구청장의 임기는 6개월로 한다.

제6조(회의) ① 명예구청장이 참여하는 정기회의는 월 1회 개최를 원칙

으로 한다.

② 임시회의는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명예구청장 3분의 1 이상이 요청한 경우에 개최할 수 있다.

③ 회의는 재적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 명예구청장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7조(예우) ①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고 명예구청장이 구정을 위한 활동을 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이 조례에서 허용하는 사항 외에 어떠한 권한도 설정되지 아니한다.

제8조(회의 참석수당 등) ① 명예구청장이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명예구청장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9조(명예구청장의 의무) ① 명예구청장은 임기 중 알게 된 공무상 정보 등에 대하여 비밀준수 의무를 가진다.

② 명예구청장은 사적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아니하고 직무를 공정하고 청렴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대덕구 자치법규안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서

□ 자치법규명 : 대전광역시 대덕구 명예구청장 운영 조례 제정조례안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주 소 :

○ 연 락 처 :

○ 의 견 :

내 용	의 견	비고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귀하